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10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유동수・안호영・김주영

윤건영ㆍ허 영ㆍ김종민

김승원 • 민병덕 • 서영교

김현정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 10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제3장제5절(제81조 및 제82조)을 같은 장 제6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5절(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수 있다.

- 1. 조합
- 2. 중앙회
-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 대여·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자산의 매입
 -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

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제1항·제3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 문·단서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0조의3(기금의 조성 · 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 · 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財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 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 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5.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 설>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 <신 설> 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 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 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 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 <신 설>

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조합
- 2. 중앙회
-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 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 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 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 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u>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u> 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

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수임
-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 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 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

<신 설>

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 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 금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자산의 매입
-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신 설>

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 기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

제5절 회계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저 금융위원회는 <u>조합과 중앙회</u>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u>조합 또는 중앙</u>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 알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 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 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 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 ⑥ (생략)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저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 ① -

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u>제6절</u> 회계
세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u>조합, 중앙회 및</u>
관리회사
<u>.</u>
②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3)
그 최. 즈이.최
<u>조합, 중앙회</u>
및 관리회사
④ (현행과 같음)
5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⑥ (현행과 같음)
세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양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u>조합 또는 중앙회</u>가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③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u> <u>앙회</u>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 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u>조합 또는</u> <u>중앙회</u>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u>조합 또는</u> <u>중앙회</u>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앙회</u>의 주된 사무

및 관리회사
<u>조합,</u>
<u>중앙회 및 관리회사</u>
· 1. ~ 3. (현행과 같음) ②
조합, 중앙회 및 관리
회사
<u></u>
③ <u>조합, 중앙회</u>
및 관리회사
4
<u>조합, 중앙회</u>
및 관리회사
<u>조합,</u>
중앙회 및 관리회사
<u> </u>

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 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 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 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지 ① 금융위원회는 <u>조합 또는 중</u> 알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

<u>관</u> i	믜회시 				
제843		 퇴임한 내용의			
<u>조</u>	라, 중 	 앙회 및 	관리호	 회사의 	
② <u>조</u> 학		앙회 및		·	
 al 852		합 등에			声)
1		ョ o ·'' <u>회사</u>	· <u>조합</u>	, 중앙	<u> </u>

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u>조합 또는 중앙회</u>에 대한 주 의 · 경고
- 2. · 3. (생략)
- ②·③ (생 략)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